

인천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635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6352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단2493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A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 선고 2021. 1. 2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단2493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5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9. 1. 25. 접수 제2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 24.자 매매예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2018. 2.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매매예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청구를 인용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하여는 104,532,796원의 범위에서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원고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3행의 'B과'를 'B와'로 고친다.
- 2)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6행의 'C은행'을 '중소기업은행'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3행의 '632,780원'을 '632,870원'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3행 다음에 '원고는 2019. 4. 5. 수원지방법원 2019차전 4116 지급명령 사건으로 소외 B는 원고에게 101,807,527 및 그 중 101,174,657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5. 24. 소외 B에게 송달되어 2019. 6.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5)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7행의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부분을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5420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로 고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13행의 '을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제5쪽 제19행의 '2019. 1. 25.'를 '2019. 1. 24.'로 각 고치고, 제6쪽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한편, 제1심이 관련 법리로 실시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과는 달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 금원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된 사안이므로, 해당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9. 현재 103,629,155원(= 대위변제금 101,174,657원 +

대지급금 1,821,628원 + 미수위약금 632,870원) 및 그 중 101,174,657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2019. 3. 28.부터 2019. 3. 31.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110,573원(= 101,174,657원 $\times$ 0.10 $\times$ 4/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인 2019. 5. 24.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1,194,192원(= 101,174,657원 $\times$ 0.08 $\times$ 54/366), 그 다음 날부터 당시 변론종결일인 2020. 11. 19.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22,618,772원(= 101,174,657 $\times$ 0.15 $\times$ (1 + 179/365))의 합계 127,552,692원(= 103,629,155원 + 110,573원 + 1,194,192원 + 22,618,772원)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외에도 K 주식회사가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33927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청구금액 7,786,5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51220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청구금액 9,088,7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L조합가 B에 대한 242,6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1,58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B 소유의 인천 강화군 M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N)에서 K 주식회사, 안산세무서, 주식회사 O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전세권자 P은 채권액 100,000,000원 중 69,663,003원만을 배당받았으며, 인천 강화군 M 소재 부동산에 대한 K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와 안산세무서의 압류등기, 주식회사 O의 청구금액 17,326,565원의 가압류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임정택

판사김종민

판사윤재남

별지